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한화생명보험 (주)		(무)대한변	액CI			
보장성	116-81-11	757	1345082	11	910114-****	김정환	287,280
	우정사업년	르부	(무)실손종합				
보장성	101-83-02	925	70082665690		910114-****	김정환	374,280
	한화생명보험	적 (주)	실속있어좋은 GI(무)				
보장성	116-81-11	757	184522294		910114-*****	김정환	1,670,088
	인별합계금액		2,331,6			2,331,648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09-90-99776	지성의원	일반	206,200
409-18-27462	시장약국	일반	3,000
135-91-56996	푸른정형외과	일반	176,600
108-91-69878	연세내과의원	일반	5,800
108-20-50248	오렌즈 이수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0,000
156-40-00309	이수 오렌지약국	일반	3,000
839-25-00978	미래약국	일반	2,600
190-16-01147	가양누리약국	일반	9,100
321-97-01380	연세맑은이비인후과(이수점)	일반	5,400
242-98-01537	증미경희한의원	일반	31,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442,9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50,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492,9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스럽그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우정사업본부	(무)실손종합	910114-1214132	김정환	342,800
101-83-02925	70082665690	910114-*****	김정환	342,000
인별합계금액				342,8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023년 합계	30,398,239	50,200	12,700	70,300	30,531,439
1월~3월	12,035,766	0	10,350	43,800	12,089,916
4월~12월	18,362,473	50,200	2,350	26,500	18,441,52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215,42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29,078,527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50,2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2,70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70,30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1,104,292
인별합	계금액			30,531,439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023년 합계	414,900	0	643,760	0	1,058,660
1월~3월	0	0	0	0	0
4월~12월	414,900	0	643,760	0	1,058,66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500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일반	391,400
직불카드 등	527-88-0068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일반	23,00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주식회사 티머니	대중교통	643,760
인	별합계금액			1,058,66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구분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2023년 합계	5,591,416	0	0	34,000	0	5,625,416
1월~3월	1,795,301	0	0	0	0	1,795,301
4월~12월	3,796,115	0	0	34,000	0	3,830,115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6-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구분	σπ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850,016	375,950	569,335	518,37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29,480	873,240	320,040	185,005	5,591,416
		62,195	661,490	284,960	561,335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거 래	0	0	0	34,000	34,000
		0	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7-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연금구분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주) 우리은행	201-81-02819	1,200,000	0	1,200,000
11219020461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0	0
순납입금	금액 합계	1,2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8-

-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 2. 공제 대상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함)
-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우리은행	201-81-02819	1320101574149	2019-09-11	1,451,830
합 계				1,451,830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9-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 2023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 우리은행 (201-81-02819)	1073514078877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2019-03-21	1,200,000
합 계					1,2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10-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조회기간 : 2023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정환	910114-1214132

■ 공제부금 납입현황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입일자 / 개정규칙 적용 여부	납입방법
202312067010	2023-12-06	의나(Month)
202312007010	N	월납(Month)

(단위:원)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월	납입일자	납입금액
01 월		0	07 월		0
02 월		0	08 월		0
03 월		0	09 월		0
04 월		0	10 월		0
05 월		0	11 월		0
06 월		0	12 월	2023-12-06	250,000
납입금액 계					250,000

1.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